

아토피·다이어트 화장품, 더 이상 속지마세요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달리 피부관리에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제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을 관절크림, 가슴크림, 아토피·여드름 치료 등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이 지난 6월 20일자로 공포되어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겨레
화장품정책과

허위·과장된 화장품 광고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과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것’ 등은 화장품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화장품 제조업자나 판매상이 신문·잡지나 방문판매를 통해 불법적 허위·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신규 제품의 표시·광고에서 10월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지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표현 목록으로 구분되는 화장품 표시·광고 범위로 ‘아토피’, ‘여드



이런 광고 주의하세요!

- 피부 질환(아토피, 여드름)에 효과, 화상·흉터·기미·잡티 제거, 관절염에 효과(관절 크림), 가슴이 커지는 크림, 살 빠지는 크림, 보톡스 크림 등의 표현
- 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줄기세포 배양액 등의 성분을 주름 개선, 미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름'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관련 표현과 '셀룰라이트', '가슴 확대', '발모 및 양모 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또한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는 안전성과 관련된 표시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경우에는 표시 가능하다.

기존 제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는 8월 4일 공포된 화장품법이 시행되는 2012년 2월 5일 이전까지 기존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정보자료> 자료실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위·과장 광고 문의 및 신고는 어떻게?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지방 식약청 및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 화장품 광고내용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보건소(의약과)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



○ 금지표현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표현
: 아토피, 여드름, 건선, 노인 소양증 등이 포함된 표현 사용금지
※ '아토피 피부 자극개선' 표방은 사용금지하되, 의약외품으로 전환 추진
다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 표현은 효능·효과 입증시 사용 가능
- 소비자 기만 표현
: 피부노화, 셀룰라이트 감소 등 사용금지
※ 효능·효과 입증 시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피부노화 완화' 사용 가능
- 화장품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표현
: 부기·다크서클 완화, 피부 손상 회복·복구 등 사용금지
※ 효능·효과 입증 시 '부기·다크서클 완화' 사용 가능
- 기타 사용금지 표현에는 ▲세포 또는 유전자(DNA)를 활성화한다 ▲피부 세포의 재생 효과가 있다

○ 허용표현

-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에 대한 기원의 표기는 특정인의 세포가 아닌 것으로서 식약청장이 고시한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중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허용
- 피부 손상을 예방·개선하고, 살결을 매끄럽고 윤기 있게 가꾼다
- 부기와 다크서클을 가려준다
-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 모발에 윤기와 탄력을 주며, 정전기를 방지한다 등
※ 이 외에 화장품 관련 법규에 의한 화장품의 정의 등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현 가능

상담센터(☎ 1577-1255)에서, 주름 개선·미백·자외선차단 목적의 기능성화장품 검색은 [화장품 전자민원](#) > [정보마당](#) > [화장품정보\(제품정보 또는 보고제품정보\)](#)에서 가능하다. 